

## 2025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연장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SW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및 지역SW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고자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모집공고[제2025-0852호]를 연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변경사항	당초	변경
접수기간	'25. 8. 22.(금) ~ 9. 19.(금) 14시까지	'25. 8. 22.(금) ~ 10. 16.(목) 18시까지

### 1. 공모 개요

- (공모목적) 지역SW·디지털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선정·표창 및 지역SW사업 수행 우수사례 발굴·시상을 통한 지역SW·디지털 산업 활성화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추진개요)
  - (유공자) 지역SW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산업육성·기술개발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총 16점의 유공자 선정 및 표창  
\* 민간(산·학·연)·협단체·지역SW산업진흥기관·기업 종사자 대상(개인 또는 단체)
  - (공모전) 지역디지털산업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SW사업 수행 성과가 우수한 사례를 공모하여 총 8점의 우수성과 선정 및 시상  
\* 3개 분야(①지역균형발전 ②사회적가치창출 ③일자리창출)중 1개 분야 지원가능
  - (포상규모) 총 24점(유공자 포상 16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8점)

구분	상장	상금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총 16점)	- (최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8)	해당없음
	- (우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표창(8)	
지역SW산업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총 8점)	- (최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4)	각 100만원
	- (우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4)	각 50만원

○ 공모주제 및 참가자격

구분	참가자격	주제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민간기업 및 협회,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지역SW·디지털·AI 산업 관련 종사자	- 지역SW·디지털·AI 산업 발전과 지역SW사업 생태환경조성에 기여한 산·학·연, 기관·협회 등 지역SW·디지털·AI 산업 관련 종사자 中 공적이 뛰어난 자를 대상으로 표창
지역SW산업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공공기관, 수혜기업 등 지역SW·디지털· AI 사업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 지역SW·디지털·AI 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SW사업* 수행성과가 우수한 사례 선정  * 지역SW사업은 공모전 신청서 내 수행사업 참 고

## 2. 접수 안내

□ (연장접수기간) 2025. 8. 22.(금) ~ 10. 16. (목) 18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mail : kfict1@kfict.or.kr)

○ 원본서류 스캔 PDF파일 및 작성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 접수가능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06 연구개발타워 903호 유세영 과장

※ 우편 접수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

구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붙임3)	지역SW산업발전 우수사례 공모전(붙임4)
제출서류	- 유공자 포상추천(신청)서 [별첨1] - 공적조서 [별첨2] - 이력서 [별첨3]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별첨4]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별첨5] - 원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별첨6] - 유공자포상 신청명단 [별첨7]	-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서 [별첨1] - 장관상장에 대한 동의서 [별첨2] - 원장상장에 대한 동의서 [별첨3] -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명단 [별첨4]

## 공적조서 작성요령

- 조사자는 추천 부서장(또는 인사 관련 부서장), 추천관은 기관장임
- 조사자 서명, 기관장 관인을 날인한 파일을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작성
- 공적내용 작성 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공적기간은 공적과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25.8.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년 ○월'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제출 서류상의 모든 수공기간을 동일하게 기재
- 주요경력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주요 공적사항의 증빙 자료 첨부

## □ 제출서류 작성 등 유의사항

-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 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3. 심사 안내

- (심사방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진행(이해관계자 심사위원 배제)
  -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정 및 평균점수 60점 미만은 입상후보작 제외
  - ※ 중복표창 여부, 결격사유(법령 위반 등) 등 주요 검토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사전검토 진행
  
- 향후일정(안)
  - '25년 10월 4주차 : 서류 적격성 검토
  - '25년 10월 5주차 : 선정평가 및 종합심의
  - '25년 11월 1주차 : 평가결과 통보
  - '25년 12월 예정 : 시상식 개최(지역디지털사업 통합 성과보고회)
    - \* 상기 일정은 일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4. 문의처

-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유세영 과장 : kfict1@kfict.or.kr / 02-2132-2085

## 참고1

## 표창 대상 · 기준 및 추천제한

### 1 표창대상

- 과학기술 · ICT분야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우리 부 소속 공무원(관서), 대외 기관 · 단체, 내 · 외국인 등

### 2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재직기간 3년 이상</li> <li>▪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근속표창 제외)</li> <li>▪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li> <li>▪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징계(견책·감봉)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면 추천불가)</li> </ul> </li> <li>▪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li> <li>▪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li> <li>▪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li> </ul>
개인 (일반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li> <li>▪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li> <li>▪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li> <li>▪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li> <li>▪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li> </ul>
단체 (대외기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li> <li>▪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li> </ul>
단체 (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분야 우수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li> </ul>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① 자격기준

### ○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 ○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 부 소속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 ② 추천제한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 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 ○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징계(불문경고) 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참고2 제한 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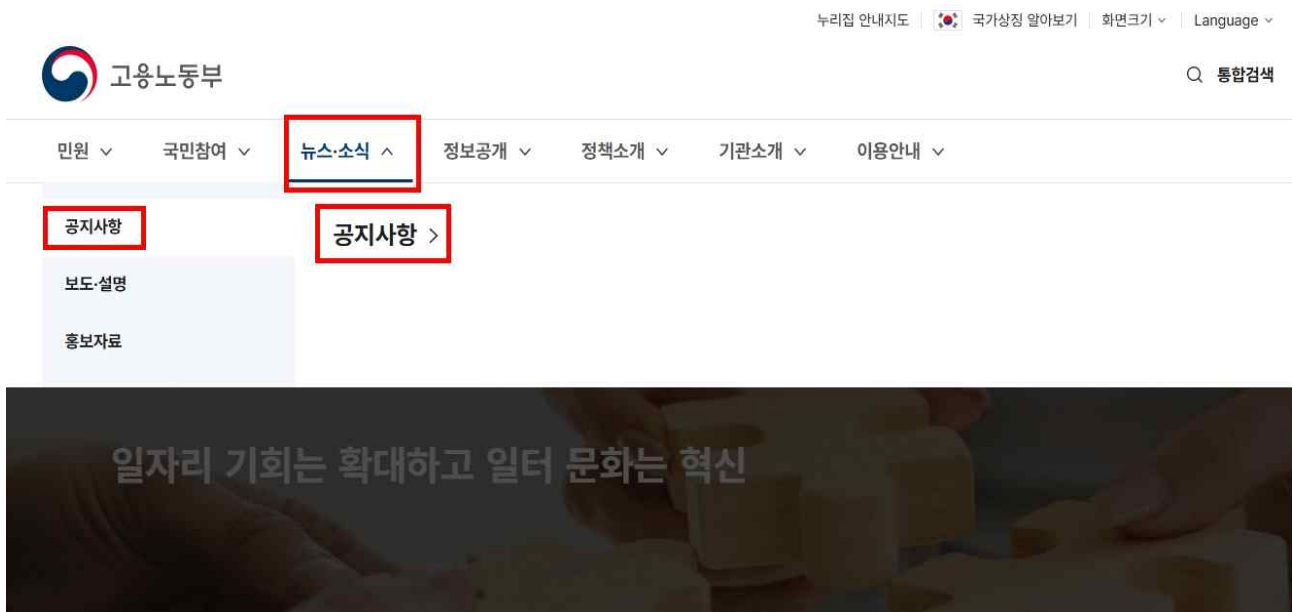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설명

홍보자료

홈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전체
- 공고
- 행사
- 입찰
- 인사
- 포상대상자공개
- 기타

전체 [선택]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전체 12 10건 보기 보기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
12	[공고] 2024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2024.12.23	6,404
11	[공고]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2023.12.29	9,680
10	[공고]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2023.02.07	9,858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범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범위반사실조회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안내지도 | 국가상징 알아보기 | 어린이 | 화면크기 | Language

통합검색

소식·뉴스 | 정책·제도 | 정보공개 | **심결·법령** | 민원·참여 | 해외경쟁정책 | 기관소개

위원회소관법령 >  
의결서·재결서 |  
심사관전결결고서 |  
심의속기록 |  
**범위반사실조회** |  
범위반조회발급

-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관련법령 | 서식관련 | 자주묻는질문

### ◇ 범위반사실조회

검색어: 전체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검색**

10

번호	연도	피심인명	조치유형
데이터 없음			

< >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l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At the top right, there are links for '누리집 안내지도', '국가상징 알아보기', '화면크기', and 'Language'. The MOEL logo and name are on the top left. A search bar with '통합검색' is also present. A horizontal menu contains '민원', '국민참여', '뉴스:소식', '정보공개', '정책소개', '기관소개', and '이용안내'. The '정보공개'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is, a vertical sidebar lists various information categories: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공공데이터개방', '청렴정책공개', '예산·법령정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and '정보공개 기타'. The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main content area to the right of the sidebar shows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홈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공공데이터개방

청렴정책공개 +

예산·법령정보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정보공개 기타 +

##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 \*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2.10.27.~2025.10.26.
- \*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3.07.13.~2026.07.12.
- \* 202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1.04.~2027.01.03.
- \* 2024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6.16.~2027.06.15.
- \* 2024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12.30.~2027.12.29.

\* 체불액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가나다순  고액순 전체 ▼ 10개씩 ▼

전체 ▼

지역-전: ▼
업종-전체 ▼
검색

전체 **814**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